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

### 1. 주요 내용

교육장과 시·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에 두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·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고, 일반징계위원회 회의위원 수를 5명 이상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, 징계 등 사유가 성폭력·성희롱 등일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,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·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였습니다.

### 2. 다운로드 : [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\(2019. 5. 26. 시행\)](#)